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17.03.30.
개정 2017.09.29.
개정 2018.04.03.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개정 2023.10.13.
개정 2025.10.01.

제1장 총칙 ---------- 제1조~제7조
제2장 의결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총회 ---------- 제8조~제13조
제2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제14조~제23조
제3절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 제24조~제30조
제3장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제31조~제38조
제4장 집행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 제39조~제41조
제2절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 제42조~제48조
제3절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 제49조~제51조
제5장 자치 기구
제1절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 제52조~제54조
제2절 공과대학 동아리 ---------- 제55조~제58조
제6장 독립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제59조~제64조
제2절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 제65조~제68조
제7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 제69조~제71조
제8장 선거 및 학생 총투표
제1절 선거 ---------- 제72조~제75조
제2절 학생 총투표 ---------- 제76조~제80조
제9장 재정 ---------- 제81조~제86조
제10장 정보공개 ---------- 제87조~제88조
제11장 법제 개편 ---------- 제89조~제93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학생 자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권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원권이 부여되더라도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1.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
2.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장단에서 중도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자
2. 학칙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의결 기구: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2.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3. 집행 기구: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4. 자치 기구: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공과대학 동아리
5. 독립 기구: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7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1. 본회의 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 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3.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③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의결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총회

제8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의장)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이거나,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0조 (소집)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②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공과대학 학생총회 소집 사실,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역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의결한다.

제12조 (의결)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예에 의한다. 다만,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총회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총회 개회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제14조 (지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은 의결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2.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단.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4. 공과대학 정식 등록 동아리가 요구할 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
① 의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이거나, 탄핵 소추 시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7조 (소집)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①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 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기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신설과 폐지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 기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요구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②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제21조 (탄핵)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의 경우 제91조를 따른다.

제23조 (안건 상정)
① 제11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② 제11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 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제3절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개회되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의결 기구이다.

제25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위원으로서 권한을 임시로 위임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운영위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장)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위원 1인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검토·조정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과반수의 발의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과대학 집행 기구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⑥ 기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⑦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받고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 기구,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⑧ 자치 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제28조 (소집)
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휴회할 수 있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임시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 (의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회의 운영 시행세칙)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궐위 또는 유고 시 제70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외 활동을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4조 (임기)
① 정식 선거로 선출된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선출)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53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53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8장 제1절을 따른다.

제36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7조 (신분보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각 부서의 장,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다. 이때 임명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고 해임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③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④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⑤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서의 장,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다. 이때 임명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고 해임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제4장 집행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제3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40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부집행위원장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다.
④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41조 (공간 조정)
①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 조정 세칙을 따른다.

제2절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제42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 집행 기구로,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등록은 제11장에 따른 회칙 개정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가 회칙 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해당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제44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 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또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제45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①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발의하는 의안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및 공과대학 학생회 집

행위원회는 각 이안(異案)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제46조 (재정)
①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재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제47조 (보고 및 감사)
①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각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기구운영세칙) 각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기구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기구운영세칙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3절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제4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단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 집행 기구로,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0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업무 분담을 위한 부서의 장을 둘 수 있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서의 장, 위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나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임명·해임하며, 임명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 (해산)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하며, 해산 날짜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의결일 이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자치 기구

제1절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제5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칙에 의거한다.

제53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①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②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은 당연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은 필요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으로부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③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학부/과/전공/반 연석회의 의장과 부의장, 혹은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지만,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4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2절 공과대학 동아리

제55조 (목적)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 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57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3. 정식 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③ 가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당연직으로 한다.
⑤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정기 회의는 1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58조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①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 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②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한 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6장 독립 기구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5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상설 독립 기구이다.

제60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모집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인준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반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61조 (업무 및 권한)
①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제62조 (위임)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3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이며,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각 회칙에 따른다.

제64조 (해산)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차기 학생회 또는 차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2절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65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업무의 원활한 인수와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이전의 집행을 위한 독립 기구이다.

제66조 (구성)
①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정식 선거 종료 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 또는 차기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단과 현직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혹은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단으로 자동 구성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학생회장 또는 차기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신임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사업
② 현직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혹은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③ 기타 집행위원회 인수에 필요한 사항 총괄

제68조 (해산) 공과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차기 학생회 또는 차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7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제6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 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2.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갈음한다.
3.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립 당시 명칭으로 통일한다.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7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제8장 선거 및 학생 총투표

제1절 선거

제72조 (선거 시기)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정식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에서 정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에서 정한다.

제73조 (선거 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③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⑤ 가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제69조 1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가 구성된다.
⑥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셈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2000+250)/(3500+250)}(%))
⑦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⑧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4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일 때 해당 유고일로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이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결정을 따른다.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5조 (선거시행세칙)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관리 기구,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② 선거시행세칙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③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학생 총투표

제76조 (지위) 학생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77조 (투표권의 범위) ① 학생 총투표의 투표권자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 전체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총투표에서 투표하려는 휴학생은 해당 학생 총투표에 한정하여 투표권자로 편입한다.

제78조 (실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학생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학생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제79조 (의결) 학생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 (위임) 학생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예에 의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81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2조 (경비와 관리)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4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 (예산)
① 매 회기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개회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④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5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86조 (자치 단위에 대한 예산지원)
① 모든 지원은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심의하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② 지원 대상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중적 기획 행사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 단위는 사업 1주 전 사업계획서를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 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제10장 정보공개

제87조 (정보공개 청구)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이나 활동 상황, 회계 등 본회의 운영 제반 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최종 책임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나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에게 있다. 아울러,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모든 회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8조 (회계 공개)

①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제2기 종료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집행위원회 회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기구의 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제2기 종료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산하 기구 회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기구 해산 전까지 해당 특별기구의 회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법제 개편

제89조 (발의)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발의
③ 회원 8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90조 (회칙 개정안 공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회칙 개정안을 발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 (회칙 개정안 의결) 회칙 개정안은 회칙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회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2조 (회칙 개정안 공포)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3조 (세칙)
①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히 명시하기 위해 세칙을 둘 수 있다.
② 세칙의 제정과 폐지의 주체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다.
③ 세칙 개정의 주체는 각 세칙에서 정한다. 다만, 개정의 주체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그 주체가 된다.
④ 세칙은 회칙에 위배될 수 없으며, 위배된 부분은 그 범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회칙과 세칙의 해석과 적용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